

#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106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년 12월 18일  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비영리영역의 다양성, 확장성 등을 고려해 프리랜서 지원 단체의 범위를 확대함.

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가. “비영리민간단체”를 “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 설립한 비영리 법인·단체·기관”으로 변경함(안 제12조 제1항 후단).

#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9조 제4항의 “세부규칙”을 “규칙”으로 한다.

안 제12조 제1항 후단 중 “서울특별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경우”를 “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설립한 비영리법인·단체·기관”으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9조(공정거래 지침) ① ~ ③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설&gt;</p>	<p>제9조(공정거래 지침 등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공정거래 지침 등을 개발·보급·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<u>세부규칙</u>으로 정한다.</p>	<p>제9조(공정거래 지침 등) ① ~ 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공정거래 지침 등을 개발·보급·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<u>규칙</u>으로 정한다.</p>
<p>제12조(기관·단체 지원)</p> <p>①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<u>단체</u>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&lt;후단 신설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설&gt;</p>	<p>제12조(기관·단체 지원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<u>단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</u>----- ----. 이 경우 지원은 <u>서울특별시</u>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	<p>제12조(기관·단체 지원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이 경우 지원은 <u>법령이나 조례</u>에 따라 <u>서울특별시</u>에 <u>설립한 비영리법인·단체·기관</u>에 한한다.</p> <p>1. ~ 6.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②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
##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 제목“(공정거래 지침)”을“(공정거래 지침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향상을 위하여”를 “향상과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포함한”으로,“(이하 “공정거래 지침”이라 한다)”을“(이하 “공정거래 지침 등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보급한다”를 “보급·적용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침을”을 “지침 등”으로, “지침의 준수를”을 “지침 등의 준수·적용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지침”을 “지침 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공정거래 지침 등을 개발·보급·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설립한 비영리법인·단체·기관에 한한다.

1.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지원
2.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·훈련 등

3. 프리랜서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개최
4. 업종별 불공정거래 관행 사례 조사 및 폐지를 위한 캠페인
5.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
6. 그 밖에 시장이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공정거래 지침) ①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침(이하 “공정거래 지침”이라 한다)을 개발하여 보급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기관으로 하여금 공정거래 지침을 따르도록 하고, 서울특별시 구청장 또는 민간기업·기관·협회 등의 장에게 공정거래 지침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.</p> <p>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 등을 받는 민간기업·기관·협회 등으로 하여금 공정거래 지침을 따르도록 요청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 설〉</p> <p>제12조(기관·단체 지원) ①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〈후단 신설〉</p>	<p>제9조(공정거래 지침 등) ① ----- ----- 향상과 계약 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포함한 ----- - (이하 “공정거래 지침 등”이라 한다) ----- 보급·적용한다.</p> <p>② ----- ----- 지침 등을 ----- ----- 지침 등 의 준수·적용을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지침 등----- -----.</p> <p>④ 공정거래 지침 등을 개발·보급·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12조(기관·단체 지원) ①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은</p>

<p>② (생략)</p>	<p><u>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설립한 비영리법인·단체·기관에 한한다.</u></p> <p><u>1.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지원</u></p> <p><u>2.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·훈련 등</u></p> <p><u>3. 프리랜서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개최</u></p> <p><u>4. 업종별 불공정거래 관행 사례 조사 및 폐지를 위한 캠페인</u></p> <p><u>5.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</u></p> <p><u>6. 그 밖에 시장이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---------------	--